

65세 미만 상이등급 1~2급 국가보훈대상자, 9월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
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국무회의 의결, 9월부터 개정 시행 -
-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선택권 확대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-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와 국가보훈부(장관 권오을)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을 개정하여,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1~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간호수당*과 장애인활동지원**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.

*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~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(보훈부)

**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,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활동보조, 방문간호·목욕 등의 서비스 제공(복지부)

두 부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, 2024년 9월부터 간호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 상이등급 3~7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. 다만, 별도의 간호수당을 받는 상이등급 1~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.

이번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개정으로, 오는 9월부터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하는 65세 미만 1~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활동보조, 방문간호·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.

대상자는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한 이후, 주소지 읍·면·동

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.

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“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다”라면서, “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도 활동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육현수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장은 “이번 제도 개선은 상이등급 1~2급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자율적 복지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”라면서 “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<붙임>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개요

<별첨>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담당 부서	보건복지부	책임자
	장애인서비스과	담당자
	국가보훈부	책임자
	복지정책과	담당자
	국민연금공단	책임자
	장애인지원실	담당자

- (근거)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의거, 2011년부터 시행
- (목적) 혼자서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
- (지원대상) 6~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
- (지원규모) 활동지원급여(활동지원등급별 산정) + 특별지원급여(생활환경 고려)
 - * 최소 약 60시간(1,040천 원) ~ 최대 약 480시간(8,293천 원)
 - * 활동지원등급 : 기능상태, 사회활동,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~15구간으로 구분

<2026년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>

구분		급여량				
활동 지원 급여	급여	1구간	2구간	3구간	4구간	5구간
		8,293천 원 (약 480시간)	7,774천 원 (약 450시간)	7,257천 원 (약 420시간)	6,739천 원 (약 390시간)	6,221천 원 (약 360시간)
		6구간	7구간	8구간	9구간	10구간
		5,703천 원 (약 330시간)	5,181천 원 (약 300시간)	4,665천 원 (약 270시간)	4,148천 원 (약 240시간)	3,629천 원 (약 210시간)
		11구간	12구간	13구간	14구간	15구간
		3,112천 원 (약 180시간)	2,593천 원 (약 150시간)	2,076천 원 (약 120시간)	1,558천 원 (약 90시간)	1,040천 원 (약 60시간)
	본인 부담	-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(국민기초생활보장법) : 면제 - 차상위계층(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) : 2만 원(정액) - 차상위 초과 : 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(41,600원 ~ 216,200원)				

- (급여종류) 활동보조(신체·가사활동·이동지원 등), 방문간호, 방문목욕
 - (활동지원기관) 지방정부의 장이 기관의 지역적 분포, 수급자 수, 적정 공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류별로 지정
 - (활동지원인력) 활동보조는 교육(50시간) 이수한 활동지원사에 의해 제공되며,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,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제공
- (시간당 단가) 활동보조 17,270원/시간('26년 기준)